

龜尾市 住宅事業所 設置 條例中 改正條例(案) 檢討報告書

○ 改正 目的

기술직 공무원의 직급명칭을 행정직 공무원의 직급 명칭체계와 같이하여 주민들이 알기쉽게 하고, 기술직 공무원들의 긍지와 사기를 앙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.

○ 改正 事由

1992.12.26 대통령령 제 13786 호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술직인 주택사업소 외 4개 사업소장의 직급 명칭을 변경코자 함.

○ 改正 內容

사업소 명	관 련 조 항	사 업 소 장 직 급 명 칭	
		현 행	개 정
구 미 시 주택사업소	· 구미시 주택사업소 설치조례 제4조 제1항	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기정	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 서기관
구 미 시 보건소	· 구미시보건소 설치및 수가조례 제4조 제1항	지방의무기좌 또는 지방보건기좌	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
구 미 시 수도사업소	· 구미시 수도사업소 설치조례 제4조 제1항	지방토목기좌	지방토목사무관
구 미 시 위생처리장	· 구미시 위생처리장 관리소 설치 조례 제4조 제1항	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기좌	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
구미시하수 종말처리장	· 구미시 하수종말처리 사업소 설치조례 제4조 제1항	지방기계기좌 또는 지방토목기좌	지방기계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